
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제296회 임시회(폐)

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2020. 9. 8.

 서울주택도시공사

목 차

I. 개정의 필요성

II. 주요 내용

III. 정관 개정(안)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I 개정의 필요성

- 기관장 성과계약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과 공사 정관 간에 상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 - 경영성과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는 바, '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'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존재이유 소멸
- ※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제348회 이사회 관련 재정기획관 의견 알림」 (2019.12.27.)
 - 상기 내용과 같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과 함께 이사회 운영규정에 해당항목 삭제 필요 의견 전달

II 주요 내용

- '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'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(제24조 제18호)

III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17. 생략 18. <u>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</u> 19.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0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| 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17. 생략 <삭 제> 19.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0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|
| |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◎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64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18호 “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